

##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법인 기본사항		⑤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⑩ 공제대상 결손금 배분액
①법인명	③법인 구분		⑥ 연결전 결손금 공제	연결후 발생한 결손금		⑨총공제 가능 결손금 (⑥+⑦+⑧)		
				⑦해당법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에서 공제	⑧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에서 공제			
②사업자 등록번호	④구분 코드							
연결집단 계								

### 1.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⑪사업 연도	⑫연결 법인명	⑬사업자 등록번호	⑭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⑮ 기공제액	⑯ 당기 공제액	⑰ 보전	⑱ 계	⑲ 기한 내	⑳ 기한 경과	㉑ 계
		소계								
합 계										

2.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가+나+다+라)

㉒ 사업 연도	㉓ 연결 법인명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㉖ 기공제액	㉗ 당기 공제액	㉘ 보전	㉙ 계	㉚ 기한 내	㉛ 기한 경과	㉜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가. 이월결손금

㉓ 사업 연도	㉔ 연결 법인명	㉕ 사업자 등록번호	㉖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㉗ 기공제액	㉘ 당기 공제액	㉙ 보전	㉚ 계	㉛ 기한 내	㉜ 기한 경과	㉝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㉔ 사업 연도	㉕ 모법인명	㉖ 사업자 등록번호	㉗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㉘ 기공제액	㉙ 당기 공제액	㉚ 보전	㉛ 계	㉜ 기한 내	㉝ 기한 경과	㉞ 계
합 계										

다.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㉟ 사업 연도	㊱ 연결 법인명	㊲ 사업자 등록번호	㊳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㊴ 기공제액	㊵ 당기 공제액	㊶ 보전	㊷ 계	㊸ 기한 내	㊹ 기한 경과	㊺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라. 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⑥⑥ 사업 연도	⑥⑦ 모법인명	⑥⑧ 사업자 등록번호	⑥⑨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⑦⑩ 기공제액	⑦⑪ 당기 공제액	⑦⑫ 보전	⑦⑬ 계	⑦⑭ 기한 내	⑦⑮ 기한 경과	⑦⑯ 계
합 계										

3.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⑦⑦ 연결 법인명	⑦⑧ 사업자 등록번호	⑦⑨ 사업연도	⑧⑩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⑧⑪ 기공제액	⑧⑫ 당기 공제액	⑧⑬ 보전	⑧⑭ 계	⑧⑮ 기한 내	⑧⑯ 기한 경과	⑧⑰ 계
		소계								
합 계										

### 작성 방법

1. ③법인구분 및 ④구분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구분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⑤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⑩연결소득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⑥연결전결손금공제란 : 「법인세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 따라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⑦해당법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해당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⑧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다른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비율대로 배분하여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의미합니다.

6. ⑩공제대상 결손금배분액란 : ⑨총공제가능결손금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결손금 공제시 해당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법인의 "차감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우선 차감합니다.

7.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증감내역을 적습니다.

가. ⑪사업연도란 :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나. ⑰보전란 : 세무계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액, 자산수증의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8.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 : 연결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손금에 불산입되어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후 연결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증감내역 및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 ④7발생액, ⑤8발생액 및 ⑥9발생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9.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각 연결법인별로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및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